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춘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671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8.

발 의 자:이춘석·정준호·위성곤

김윤덕 • 윤종군 • 윤준병

안호영 • 이원택 • 임미애

한민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시·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도록 시·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 또한, 시·도지사는 주택의 건설·공급 및 관리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·주택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지방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의 내용 중 주택·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도록 하고, 지방정부의 주택의 건설·공급 및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

앙정부와 사전협의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주택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, 제7조제2항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"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"를 "택지 수요·공급의기본원칙에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공공주택의 공급에"를 "공공주택 공급의 기본원칙에"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중 "협의"를 "협의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"장과 시·도지사는"을 "장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, "협의의"를 "협의·보고의"로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5조(주거종합계획의 수립) ①	제5조(주거종합계획의 수립) ①			
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				
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				
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				
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				
(이하 "주거종합계획"이라 한				
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	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	
2. 주택 · <u>택지의 수요 및 공급</u>	2 <u>택지 수요·공급의 기</u>			
<u>에</u> 관한 사항	<u>본원칙에</u>			
3. 공공임대주택 등 <u>공공주택의</u>	3 <u>공공주택</u>			
<u>공급에</u> 관한 사항	공급의 기본원칙에			
4. ~ 10. (생 략)	4. ~ 10. (현행과 같음)			
② ~ ⑧ (생 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			
제7조(주거정책에 대한 <u>협의</u>) ①	제7조(주거정책에 대한 <u>협의 등</u>)			
중앙행정기관의 <u>장과 시·도지</u>	① <u>장은</u>			
<u>사는</u>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				
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				
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				
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				
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			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	
<u><신 설></u>	② 시・도지사는 제1항 각 호			
	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			

<u>2</u>	제1항에	따른	. 협	의대/	상 기
관,	협의의	범위	및	절차	등은
대통	통령령으	로 정	하다		

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
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
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
하여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
<u>협의 · 보고의</u>